##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73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진종오·서천호·박충권

정성국 • 박정하 • 백종헌

곽규택 • 최보유 • 서명옥

김형동 · 김미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 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는 기 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에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

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나목 후단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집중검사 : 매년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검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절기에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집중검사 를 면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제19조(안전검사) ①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나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	<u>3년</u>		
<u>년마다</u> 정기적으로 정밀안	마다		
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집중검사 : 매년 동절기(12		
	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u>야 한다.</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검		

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 기검사 및 제3호에 따른 정밀 안전검사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에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집중검사를 면제한 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u>⑦</u> (생 략)